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독립기념관 이사에 대한 해임 및 지명 철회 근거 마련〉

■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98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독립기념관 이사에 대한 해임·지명 철회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31인
2. 제안일 : 2024. 8. 13.
3. 회부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복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겨레의 전당임.

독립기념관이라는 기관 특성상 역대 관장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친일반민족사 등을 연구한 학자들이 임명되었음.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

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독립기념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 전쟁기념관장 등과 함께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지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 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 또는 이사로 임명·지명되는 것을 막고 추후라도 관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독립기념관 이사에 대한 해임·지명 철회 근거 마련

-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을 포함한 독립기념관 이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에게 해임 또는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고, 임명권자 및 지명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이사를 해임하거나 지명 철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원의 <u>결격사유</u>)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임원의 <u>결격사유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이사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관장, 제7조제3항제3호·제4호에 따라 임명 또는 지명된 이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를 제외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에게 해당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u>

	<u>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u> <u>해당 이사를 해임하거나 지명</u> <u>철회를 하여야 한다.</u>
--	---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사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 하도록 하고 있으나,¹⁾ 이미 임명 또는 지명된 독립기념관 이사에 대한 해임 또는 철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²⁾

○ 이에 대하여,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의 이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하여 집행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이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

1) 「독립기념관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다만,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기관장의 행위로 인하여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임 건의 요청을 할 수 있음. 동 조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것이지만,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기타 공공기관)은 이를 준용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에게 해당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를 건의하고,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이사를 해임하거나 지명 철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표 1] 독립기념관 이사회 현황

직 위		임기	인원	임명(지명)권자
이사회 의장 (독립기념관장)		3년	1	대통령
비상임이사	(광복회장)	재임기간	1	당연직
	(보훈문화정책관)	재임기간	1	
	(국회의원)	2년	4	국회의장
	(임명직)	2년	8	보훈부장관
계			15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기념관은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 이러한 독립기념관의 설립목적과 헌법 전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독립기념관 이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의견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정하고 공적 영역에서 이를 판단하여 제재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수범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가 예견가능할 정도로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2024. 8. 28., 김용만의원 외 169인)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역사 인식의 문제는 개인마다 다양하고, 개인의 역사관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독립기념관은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광복회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